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
폐지 조례안“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주현)

### 1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18. 04. 02.
- 회부일 : 2018. 04. 04. (의안번호 : 18-29)

### 2. 제출이유

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위임근거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가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시 조례 위임근거 해당조항 삭제로 조례폐지 필요
  - “사회복지 사업법” 제8조(복지위원) : 2017.10.24일 삭제
  - “사회보장 급여법” 제44조(복지위원) : 2017.3.21일 삭제
- 위 법령상 조항이 삭제된 “복지위원” 관련 내용이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보장협의 운영 조례”에 반영되어 있음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“사회복지 사업법”, “사회보장 급여법”
- 예산조치 : 향후 조치필요
- 입법예고 : 제출의견 없음
- 기타사항 : 조례 개정안 시행관련, 규제·부패·갈등·성별 등 분야별 사전영향평가 협의사항의 경우 해당내용 없음

## 5. 검토의견

2008년 제정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”의 위임근거 상위법인 “사회복지 사업법” 제8조(복지위원)의 조항이 2017. 10. 24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“사회보장 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” 제44조(복지위원)의 조항이 2017. 3. 21일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음

아울러, “복지위원” 관련 조항이 상위법에서 삭제는 되었으나 그 기능에 필요한 내용이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”에 반영되어 있음.

따라서,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이견 “복지위원”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, 시책추진상 문제가 없고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# ※ 참고자료

- 법령 일부개정시 삭제된 “사회복지 사업법” 제8조(복지위원)
- 법령 일부개정시 삭제된 “사회보장 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” 제44조(복지위원)
-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” (2008년 제정)

## [참고자료]

### 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17.12.20.] [법률 제14884호, 2017.9.19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 : 총칙 등) 044-202-3009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: 사회복지법인, 임원, 시설) 044-202-3252

보건복지부(복지정책과: 사회복지사 자격) 044-202-3022

**제8조(복지위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복지위원의 자격, 직무,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

[전문개정 2011.8.4.]

**제8조 삭제 <2017.10.24.>[시행일 : 2018.4.25.]** 제8조

###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(

약칭: 사회보장급여법 )

[시행 2017.5.30.] [법률 제14224호, 2016.5.29.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(급여기준과) 044-202-3144

**제44조(복지위원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 단위로 읍·면·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복지위원의 자격, 직무,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(

약칭: 사회보장급여법 )

[시행 2017.9.22.] [법률 제14696호, 2017.3.21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급여기준과) 044-202-3144

**제44조 삭제 <2017.3.21.>**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08.12.23 조례 제 734호  
(일부개정) 2012.09.27 조례 제876호 (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의 정수)** 위원은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, 인구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촉)**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직무)**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지역사회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요보호자등 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한 선도 및 상담
2.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4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
5.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

**제6조(해촉)**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의)**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8조(교육)** 구청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**제9조(증표교부)** 구청장은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, 그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 표와 같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제876호, 2012. 9.27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